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1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이강일 · 김문수 · 백혜련
민병덕 · 김남희 · 박홍배
이훈기 · 박정현 · 김남근
손명수 · 황운하 · 송재봉
김 윤 · 강준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방법
3.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⑤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선거방법 등) ① (생 략)	제39조(선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 용지에 기표(記票)하는 방법으 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 ----- <u>. 다만, 관할위원회는</u> <u>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u> <u>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u> <u>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u> <u>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u> <u>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온라</u> <u>인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u> <u>시할 수 있다.</u>
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u>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u> <u>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u> <u>는 경우에는 선거인에 대하여</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u> <u>인하여야 한다.</u> 1.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u> <u>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u>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u> <u>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법</u>

<신 설>

<신 설>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관
할위원회는 해당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
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이 조
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
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
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방법

3.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⑤ 관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
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
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
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u>고하고 해당 위탁단체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u> <u>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 및 개표의 절차</u> <u>·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